

농림수산부의 축산물 유통구조개선 대책 요약

1) 축산물종합처리장의 건설

◦ 도축·가공시설, 폐수·폐기물 처리시설, 냉장육 유통에 필수적인 계류장·방혈시설, 부분육가공·진공포장시설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최신시설을 설치

- 시설규모: 소 50~100두/1일(연간 2~3만두)
돼지 1,000~2,000두/일(연간 30~60만두)
- 2000년까지 축산물종합처리장 10개소 건설
- '94~'96: 3개소 설치('94예산 192억원)

- 백화점, 슈퍼체인 등 육류판매망을 확보한 유통업체, 축협 등의 생산자단체 또는 식품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이 종합처리장 건설 및 운영주체가 되도록 함

- 종합처리장 중심의 수직계열화 추진
- 축산물종합처리장은 한우전업농 및 한우생산 협업체와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열

생산체계 구축

- 축산물 종합처리장은 계열농가에게 사양기술지도를 실시하여 고급육 생산유도
- 계열화 생산에 참여하는 양축농가, 협업체에게 시설개선자금 등 지원
- 축산물 종합처리장은 소·돼지를 위생적으로 도축하여 부분육·냉장육으로 가공하고 상표를 부착하여 자체판매 조직(직영점, 체인점, 음식점)등을 통해 판매
- 참여 체인점(정육점)에 대해서는 판매장 시설개선 자금 지원

2) 중소규모 도축장의 시설개선 및 정비

◦ 비위생적이며 불비한 도축시설을 현대화된 공정이 가능하도록 시설개선 추진

- '93년말 현재 160개 도축장(평균가동율: 소 23%, 돼지 57%)은 대부분 육류 소·도매업자의 의뢰도축 중심으로 운영
- 시설개선사업 추진
- 도축시설개선과 병행하여 부분육 가공공장 병설 추진

· '93년까지 24개소(201억원 지원) → '94
계획 10개소(140억원 지원)

- 시설미비 도축장 정비추진
- 관영도축장: 시·군 소유 관영도축장의
임대위탁 경영금지 및 폐쇄유도
- ('90)65개소 → ('93)58개소
- 축협 및 민영 도축장의 경우 시설기준 강
화방침에 따라 정비

3) 육류도체등급제 및 부위별차등 가격제 정착

- 도축단계에서 소·돼지의 도체등급을 판
정하여 육질에 따른 가격차별화를 유도함으로
써 양축농가의 고급육생산의욕 고취 및 소매
단계의 차등가격형성 기반구축
- 고급육 출하농가 포상금 지원: A-1 200
천원, B-1 100천원/두
- 도체등급제 실시지역을 연차적으로 확대
- ('93.7.1) 서울지역 → ('94.7.1)부산지
역 → ('95.1.1) 기타 직할시
- 소매단계의 등급별·부위별차등가격제를
백화점, 한우전문판매점 등 선도적인 업소에서
일반정육점으로 점진적 확대

4) 한우전문판매점 설치 확대

- 한우고기의 시장차별화를 도모하기 위한
한우 전문판매점 설치
- '93년말 101개소 설치, '97년까지 700개
소 목표(한우고기 판매량의 30~40% 소화)
- 장소임대, 진열장, 숙성실 등의 설치를
위한 자금지원(개소당 2~2.5억원)
- 한우고기의 도축·가공·판매단계까지의

유통과정을 철저히 관리하여 시장차별화 유도

- 수입쇠고기의 한우둔갑 방지를 위한 원산
지표시 의무화 및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지급
- 젓소고기의 한우둔갑 방지를 위한 도축검
사 도장의 색깔구분(한우: 적색, 젓소: 청색)
-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한 품질인증제
및 브랜드화 실시

- 축산물종합처리장 또는 중소규모 도축장
의 체인점화 추진

5) 유통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소비자 홍보

- 식육기술훈련원의 설치('97년까지)를 통
하여 식육처리 전문기능인력을 양성
- 도축·발골·부분육가공 등의 기술교육
실시로 축산물유통의 핵심기술인력 육성
- 도축장경영자 및 작업팀장, 식육판매업자
등을 대상으로 한 위생적인 육류취급방법 교
육
- 한우고기의 우수성, 냉장육, 브랜드육에
대한 소비자홍보 추진
- 한우사육, 도축, 등급판정, 등급별·부위
별 차등가격판매 등에 대한 소비자 홍보를 통
하여 한우고기의 우수성 인식제고
- 구체적인 홍보 프로그램에 의한 체계적인
교육, 홍보 추진
- 유통홍보를 위한 기획 프로그램 적극 개
발활용